

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

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691)

-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 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.

* 기업도시는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후 일정비율 이상 공사진행 후 선수금 수령 가능

-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,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,
 -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%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
-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,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<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전 분양 가능>

- ▶ 추진배경 :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,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발생
- ▶ 주요내용
 - ① 개발구역 면적의 70% 이상 매립면허권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 완료전 분양 및 선수금 수령 허용
- ▶ 시행일 : 2013.12.5.